

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

청산 대부채권 회수

1. 투자자 현황

(담당자명 : _____ 전화번호 : _____)

| | | |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
| 상호 또는 성명 | _____ | 사업자(주민)등록번호 | _____ |
| 소재지(주소) | _____ | | |

2. 현지법인에 관한 사항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----|
| 현지법인명 | _____ | | |
| 소재지(주소) | _____ | | |
| 법인형태 | 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자원개발사업 | 납입자본금 _____ |
| 투자형태 ^{주1)} | <input type="checkbox"/> 단독투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투자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합작투자(한국측 투자비율 : _____ %) | |

주1) "공동투자"라 함은 국내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"합작투자"라 함은 비거주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함.

3. 대부금 회수 내역

| | | 일 자 | 원 금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|
| 대부금액 | | | |
| 회수 금액 | 기 회수금액 | | |
| | 금회 회수금액 | | |
| 잔액 | | | |

4. 잔여자산 회수 내역

가. 해산개시일(해산등기일) :

청산종료일 :

나. 청산등기일 현재의 재산상황

(단위 : _____)

| 자 산 | 금 액 | 부채 및 자본 | 금 액 |
|--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
| 유 동 자 산 투 자 및 기 타 자 산 고 정 자 산 이 연 자 산 | |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이 연 부 채 자 본 금 잉 여 금 | |
| 계 | (US\$ _____) | 계 | (US\$ _____) |

* 환산율 : US\$ 1=



- 다. 청산손익(해산일로부터 청산종료일까지의 손익) :
- 라. 회수되어야 할 재산[("나"의 순재산액±"다") × 한국측 투자비율] :
- 마. 회수재산 내역

(단위 :)

| 회수일자 | 구 분 | 회수재산의 종류 | 금 액 | 비 고 |
|------|-----|----------|-----|-----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계 | | | |

주) 금액단위가 U\$이외인 경우는 U\$에 의한 환산액을 비교란에 기입할 것

- 바. 회수가 불가능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내역 및 사유 :

5. 첨부서류

- 가. 청산인 경우
 - 등기부등본 등 청산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 - 청산손익계산서 및 잔여재산 분배전의 대차대조표
 - 잔여재산(증권의 전부 양도인 경우에는 양도대금) 회수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외화매입 증명서(송금처 명기), 또는 현물회수의 경우 세관의 수입신고필증
- 나. 대부채권 회수인 경우
 - 외환매입 또는 예치증명서(송금처 명기)

※ 1) 본 보고서는 국내회수후 즉시 보고하여야 함. 다만, 해외에서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에 보고 할 것



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 관련 유의사항

1. 청산 즉시 잔여재산 또는 원리금을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회수하고, 회수 즉시 신고기관의 장에게 청산보고를 해야 함
2. 비거주자에게 지분 전액 매각은 청산절차에 준하여 보고해야 함
3. 청산보고서 내용과 첨부서류 내용이 일치해야 함
4. 청산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현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(현지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결산서 또는 세무보고서로 같음가능)를 같이 제출 해야 함
5. 청산 후 분배잔여재산을 외국에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청산 보고를 한 후 해외에서 운용 가능함
6. 잔여재산을 회수하지 않거나 청산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벌칙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

※ 주요항목 기재 요령

- 해산개시일 : 현지법인 해산을 의결하고 현지국의 법원에 해산등기를 한 날
- 청산종료일 :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현금화하여 투자 지분율에 따라 현금 수취를 종료한 날
- 청산등기일 현재의 재산상황 : 해산등기일 현재의 요약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작성
- 청산손익 : 해산개시일로부터 청산종료일까지의 손익
- 회수되어야 할 재산 : 요약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(자산총액-부채총액) ±청산손익)×한국측 투자비율
- 회수재산내역 : 회수일자 별 회수재산의 종류 및 금액

